

대신대학교 교원연구년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위하여 궁극적으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년”이라 함은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에 대하여 본 대학교의 강의 및 학생지도 등 통상적인 임무를 면제함으로써 개인 및 대학발전에 필요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연구년 교수”라 함은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연구년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교원을 말한다.

제3조(대상) ① 본 대학교에서 6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연수가 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학의 정책에 따라 총장의 승인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② 연구년을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회의 연구년이 종료된 후 6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6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파견(유학), 연수를 한 교원은 그 기간 만료 후 7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④ 교무위원 및 학과장은 보직 재임기간 중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시기 및 기간) ① 연구년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시작과 복귀 시기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외연수 중인 연구년교수가 그 연구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 휴직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교원은 기간내에 휴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신분보장 및 처우) ① 연구년 교원은 전임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의 보수는 봉급과 연구비만 지급한다. 다만,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 중 학교 봉사 기여도가 높은 교원에게는 연구년 경비 또는 연구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년기간 동안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교내학술연구비 연구결과물을 연구년제 연구결과물로 중복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년 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하며,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조(제한) ① 매 학년도 연구년 교원의 수는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연도의 해외 파견 교원 예상 인원을 합하여 재직 교원수의 7%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매 학년도 학부(과)별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학부(과)별 교원 수가 9인 이하인 학과는 1인으로 한다.

③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연구년 교원 선정 및 승인을 제한한다.

④ 연구년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년 신청을 제한한다.

1. 전년도 강의평가 결과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인 교원
2. 최근 2년간 강의 책임시수 미달인 교원

제7조(신청) 연구년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연구년 희망시기 6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년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3. 소속 학부(과) 연구년 신청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4. 연구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5. 초청장(원본, 번역본) 및 공동연구 수락서(제안서) 등은 연구년 예정일 30일전에 제출

제8조(선정절차) ①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본 규정에 준거하여 교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원 연구년 선정 결과를 확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 ①연구년 교원은 약정된 연구기간 종료되면, 즉시 복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복귀하여야 한다.

②연구년 종료 후 복귀한 교원은 복귀 후 최소한 2년 이상 본 대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

③연구년 기간 중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총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고지하고 총장이 지정한 날짜에 복귀하여야 한다.

④연구년 기간 중에는 국내의 타 대학교에 강의 및 타 기관에서 종사할 수 없다.

⑤연구년 과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변경사유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연구년 종료 1년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결과물은 「교원업적평가규정」 평가기준에 의한 학술지인 경우에는 주(교신)저자로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하고, 발표인 경우에는 국제 또는 국내 개인 연주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연구결과물은 대신대학교 교원연구년제에 의하여 지원됨을 명기하여야 하며 전시회 및 학술저서인 경우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평가한다.

제10조(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제9조 제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복귀시점까지 보수지급을 중단하고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한 연구년연구비, 항공료 등을 회수하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다.

②제9조 제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한 연구년 연구비, 항공료 등 지원한 총 금액의 1.5배를 부과하여 회수되면 사직서를 처리한다.

③제9조 제③항과 제④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년 기간 중 신청한 교내 일반연구비의 지급금을 회수하고 연구년 종료 후 3년간 각종 교내 연구지원을 제한한다.

④제9조의 제⑤항과 제⑥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년 기간 중 신청한 교내 일반 연구비의 지급금을 회수하고 연구결과물이 제출될 때까지 교내 연구지원을 제한한다.

제11조(초과기간) 연구년 교원이 부득이 연구년 기간을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초과 기간은 휴직 처리한다. 단, 초과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연구년허가신청서					학부(과)장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임용일자		. . .					
주 소											
2. 최근 국외 파견사항											
국 가 명				연구기관명							
체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3. 연구년 신청사항											
국가명(연락처)		()		연구기관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 구 계 획											
4. 해당학과 교원중 해외연수 또는 연구년 중인 교수 현황											
직 위		성 명		국 가 명		연구기관		기 간		비 고	
상기와 같이 연구년을 신청하며, 선정될 경우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											

연구결과보고서				학부(과)장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2. 보고사항					
출 국 일 자				귀 국 일 자	
연 구 국 가 및 기 관 명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활용방안		학 술 분 야			
		대학운영분야			
연구실적물		게 재 지 명		게 재 일 자	
		발 표 일 자		발 표 장 소	
첨 부 : 연구실적물 1부. 위와 같이 연구년제에 의한 연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인)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소속			직위	
성명				
변경사항	구분	연구과제 ()	연구과제명 ()	
		연구장소 ()	기타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변경 사유는 요약하여 기재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가능.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실 등은 본인의 귀책임을 확약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				

서 약 서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본인은 학년도 반기 교원연구년제 신청자로서 지원이 결정될 경우 교원연구년제 규정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상기의 과제를 성실하게 연구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신대학교 교원연구년제 규정 제10조(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의거 각종 교내 연구지원 제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학부(과)

직 위

성 명

(인)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

연구 계획서

연구자 인적 사항	학부(과)			
	직위(급)		성명	
학문분야			세부분야	
연구결과발표	☐ 논문게재(국내, 국제)		☐ 공연발표회	☐ 기타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기간				
연구년제 파견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결과 활용방안				
기타사항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A4) 사용.
위와 같이 교원 연구년제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신대학교 총장 귀하